

악법의 쇠사슬로 국민을 묶어 노예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올림픽이 선진조국이니 라고 떠들면서 온갖 호사방탕을 일삼은 독재의 무리들에게 다시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제반 반민주악법의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 앞으로는 결코 위정자들이 제멋대로 행세하지 못하게 썰기를 박읍시다.

〈'머릿말'에서〉

반민주 악법에 대한 총괄서

반민주 악법은 개정, 폐지되어야!

- 반민주 악법에 대한 총괄서 -



반민주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Tel. 736-3654, 3655)

▶ 전국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원회 산하 반민주악법개폐 특별위원회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가톨릭 농민회, 기독교농민회 총연합, 민주화 실천교사협의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진보정치연합, 민중문화운동연합,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기독교 사회운동협의회 준비위,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 인천 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 광주·전남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 전북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 대구·경북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 충남 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위.

- ▶ 한국여성단체연합
- ▶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 전국교사협의회
- ▶ 전국농민협회
- ▶ 민주쟁취국민운동서울본부

NSL.1.45

반민주 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반민주 악법은 개정, 폐지되어야!

- 반민주 악법에 대한 총괄서 -

반민주 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목 차

머릿말.....	5
1. 국가보안법.....	8
보론·간첩조작사건.....	15
2. 사회안전법.....	23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0
4. 행정법.....	35
5. 노동법.....	40
6. 농업관계법.....	50
7. 재개발법.....	61
8. 교육관계법.....	72
9. 언론·출판관계법.....	77
10.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예방법	80
12. 지방자치제법.....	91
공동성명서.....	98

머 리 말

최근 신문, 방송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구역질나는 부패와 비리,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엄청난 진상들에 대해 우리 국민은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들의 뻔뻔스런 태도와 그 공범자들이 비호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오장육부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80년 5·17 이후 박정희—공화당 정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정화위원회’까지 이곳저곳에 설치했던 저들은 한 수 더 떠서 온갖 야만적이고 추악한 짓을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베일의 한 귀퉁이라도 벗겨낸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한 댓가이며 작년 6월 민중항쟁을 일으킨 전 국민의 투쟁의 소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가슴 쓰라리고 원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며 투쟁했음에도 아직 우리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광주학살의 범인들이 아직도 네 활개치고 있는 동안에는, 저 반역 군인들과 그에 밀붙은 정치 모리배와 독점재벌이 큰소리치는 동안에는, 배달민족을 모멸하고 뒤흔들며 상전노릇을 하려는 저 양키놈들이 조국의 땅을 더럽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결코 승리자일 수 없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저들이 수천억원씩 뱃속에 처넣고 있을 동안 우리 민중은 '국가보위입법회의'란 깡패기관에 의해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악법의 사슬에 묶여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박탈당했었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안 되는 수맷가에 허덕이면서도 관제농협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었으며, 재개발법에 밀려 집에서 쫓겨나오는 철거민들은 호소할 곳이 없었고, 언론·출판·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온통 폭력과 법으로 묶였었고,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묶여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온갖 악법의 쇠사슬로 국민을 묶어 노예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올림픽이니 선진조국이니 하고 떠들면서 온갖 호사방탕을 일삼은 독재의 무리들에게 다시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제반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 앞으로는 결코 위정자들이 제멋대로 행세하지 못하게 쉼기를 박읍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교사, 학생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엄청난 힘으로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한데 모아내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현 정권과 민정당에 대해서, 또 야권 3당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2일 제 민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통일적인 투쟁을 시작하기에는 무리한 시점에 이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공동투쟁을 벌이기에는 각 부분간에 서로 잘 모르는 점도 많고 준비정도도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악법철폐투쟁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보다 깊고 넓은 전망에서 사회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작은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보다 잘 모르는 부분을 보다 유심히 살펴 보십시오. 반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포애가 진하게 흐를 것이며 이 땅 어디 한군데에도 피멍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진한 느낌을 받으면서 온 민중이 하나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조국 44년 11월 24일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이 우정

1. 국가 보안법

“국가 보안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등과 기타의 기존 법률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므로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변호사 모임인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의 일부이다. 국가 보안법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입증된 법률이다. 이미 예비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65%가 국가 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현 독재 정권을 연장하고 분단 체제를 유지하며 민중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게 국가 보안법이 유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당연시되어 있는 이 법에 대한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의 입장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폐지 불가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평민당, 민주당 등에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적 개정을 공식 입장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반민주 악법 개폐 특위’에 개정 시안을 상정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I.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국가보안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 배경

국가 보안법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이 민족

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고 모든 반대 세력을 협박·위축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1948년 12월 1일에 공포·시행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지 1년만에 무려 118,621명이 이 법에 의해 검거·투옥되고 132개의 정당·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그후 이 법은 몇차례 개정을 겪다가 소위 2·4파동을 거쳐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되었다. 이때 개정의 특징은 언론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애매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반공을 빙자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데 있다. 이 법은 4·19이후 반민주악법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었으나 민중운동이 고양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 과거와 비교 대폭 수정·완화된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1961년 군사 구테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면서 1961년 7월 3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반공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하는 자나 이들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 등을 포괄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해 명백한 이적행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적의 목적이 없는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용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1962년 9월에 다시 국가 보안법을 강화·개정하였다. 이후 국가 보안법과 반공법은 이른바 국가보안 및 사상사건을 규제하는 양대 법이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반공법이 주로 적용되었는데 포괄적인 규정을 활용, 수 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던 반공법을 폐지함과 아울러 이를 국가 보안법에 흡수시킨다는 명목으로 국가 보안법을 보충·개정하였다.

II. 국가 보안법에 의한 탄압 양태

국가 보안법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탄압사례는 소위 '진보당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승만은 조 봉암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4%인 216만표를 획득하여 자신의 경쟁자로 부각되자 그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였다.

반공법이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적용된 예는 앞의 예 이외에도 강희남 목사 사건(1977.5.13)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의 제1심인 전주 지방법원 판사의 다음 말은 반공법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날의 행적으로 보나 증인들의 증언들을 들어보아도 또 기독교 목사인 점으로 보아도 도저히 공산주의자이거나 공산주의를 찬양할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재판부도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반공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본 재판부도 확실히는 모르겠으니 항소해 보시오." 그러나 재판부는 곧바로 무려 10년이라는 중형을 언도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 보안법 시대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국가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급증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군산 아람회 사건, 전국 민주학생 연합사건, 전국 민주 노동연합사건, 부산 양서조합 사건, 서울대 민주위 사건, 김근태·이 을호 사건등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제 7조3항] 및 고무·찬양[제 7조1항]으로 구속·처벌되었다. 그리고 1986년의 경우 총 997명의 양심수 중 16.5%인 165명이나 국가 보안법 위반자였다.

III.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

1. 반국가 단체의 정의

국가 보안법 [제 2조 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 하여 반국가 단체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반국가 단체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어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조직을 실제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조직에는 앞에 예를 든 진보당, 전국 민주학생연합, 북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다. 먼저 진보당의 경우 이 당은 민족사회주의적인 정강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던 정당이고, 전국민주학생연합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 조직이었다. 따라서 이런 조직에 반국가 단체의 낙인을 찍은 것은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수립하려는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올해 2월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국 검찰에 시달한 <대공산권 교류와 관련한 현행법규 운용지침>에서 "국가 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에는 북한을 제외한 여타 공산권 국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반국가 단체] 아닌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반국가 단체로 남는 것은 북한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의 최고 당국자와 회담을 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정권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권을 계속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으며 통일에 장애가 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 보안법은 그 기초를 이루는 반국가 단체의 정의 및 그 구체적 내

용에서 이미 아무런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 7조] 찬양·고무 등

과거 반공법의 내용을 흡수한 것으로 현행 국가 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제 7조 1항]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있어서 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구성 요건에서 목적성을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형법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정면 대립하고 있다. 또 ‘동조’라는 용어는 극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로서 그 적용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 더욱이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는 표현은 판단에 무제한의 자의성이 개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은 적용되어 왔다. 가령 반독재 투쟁의 경우 이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 보안법 위반이 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3. [제 8조] 회합·통신 등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역시 ‘이적’ 개념의

보존성으로 자의성을 게재시키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남북 회담에 참석하는 행위, 남북회담 결과에 의해 남북 이산가족이 재회하고, 서신 연락을 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4. 고문에 의한 조작

현재 국가 보안법의 조항은 자의적 판단을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혐의자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가 국가 보안법 하면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을 연상하는 것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 보안법 관련 혐의자가 고문을 받아온 현실의 반영이다.

IV. 국가 보안법을 폐지되어야 한다.

노 태우는 7·7선언에 이어 10월 19일 0시 UN연설에서 이전에 선택적으로 언급하던 남북 불가침 선언, 군비축소 등의 문제를 묶어 공식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 제안의 요지는 노 태우가 평양을 방문, 김 일성을 만나 불가침 또는 무력 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 선언하며 이 회담에서 군비 축소 등 군사문제,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 협의회의를 열자는 것과 평화시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노 태우의 UN 연설은 스스로 국가 보안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도 같다. 북한 당국이 반국가 단체가 아닌 하나의 ‘정부’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보안법의 토대는 모두 무너져 버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 그대로 노 태우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노 태우 자신이 국가 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국가 보안법이 존속될 이유는 어느 곳에도 없다. 만일 국가 보안법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7·7 선언 및 UN 연설 모두가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외에 선언하는 것과 같다. 현재 군사독재 정권은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10월 28일자 한겨레 신문보도에 의하면 군사독재 정권은 "최근 사회 일각에서 소련·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들어 국가 보안법의 폐지 여론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반국가사범에 대한 심리적 강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의 발언에서 국가 보안법이 분단과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국가 보안법이지만 이 법 자체가 폐지될 경우 닥칠 자신들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군사독재 정권은 이 법을 계속 유지하거나 일부 개정으로 사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과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의 폐지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간첩조작사건

- 소위 '관제빨갱이'란 무엇인가

양 재 모(양승선씨 아들)

1. '관제빨갱이'의 정의

종종 이 사회에서는 간첩이라는 사건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간첩사건의 진실을 알고보면 가혹한 고문으로 파생된 조작극이 대부분이었음을 이자리를 빌어 밝히고자 한다. 가칭 '관제 빨갱이'는 다섯종류의 조건이 계기가 되어 조작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연좌제에 의한 사건

: 한국전쟁전후 월북한 가족이 있는 경우로서 월북한 가족이 남파간첩으로 내려왔다는 가설을 추정하여 포섭되었다는 조작극 사건이다.

둘째, 일본으로 유학한 사건

: 남한내에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적성국 단체인 조총련이 일본내에 생존하고있다. 자연스럽게 조총련과 연관시킨 사건이다.

셋째, 일본으로 여행을 한 사건

: 이 또한 조총련과 연관시킨 사건으로 대부분이 친척중 조총련인 경우를 파악하여 연관시키거나 사업차(물색) 접촉한 자가 조총련인 경우도 해당이 된다. 이 경우의 범주에 넣기가 애

매한 부분이 있다. 연예인들(특히 여자들)의 일본취업이 빌미가 된 사건이 있는데 조총련(손님으로 볼 수 있는)과의 접촉을 이끌어낸 경우가 있다.

네째, 재일교포 유학생사건

: 서준식, 강종건, 이철씨사건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남북어부 사건

: 이 경우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가장 가혹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써 실제로 강제남북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관들이 조작하는 대로 사건이 커질수도 작아질수도 있다. 가장 취약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다만 10~30년전에 남북된 사실만 가지고 조작하였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여길뿐이다. 현재 파악된 사건은 정삼근씨가 있고 똑같은

(1) 명 단 현 황

*가나다순

순번	이름	나이(세)	형량(년)	구속일(교도소)	조사기관	불법감금기간	사건내용	전향유·무	언론방송	자료확보	기타
1)	고창표	55	15	83. ()	안기부	70여일	일본관련	84.2경	84.2경	탄공	군인(중령예편)
2)	구명서	36		85.10.26()						공	
3)	구명우	32	7	86.4.29(안동)	남영동	40여일	일본관련	유	X	공,탄실	
4)	김성규	47	10	83.10. (광주)					확	인	
5)	김순일	12		86.8. (안동)	호안교포						교포
6)	김양기	39	7	86.4.5(광주)	호안교포	70여일					
7)	나진	56	15	81.6.22(안동)	육인동	90여일	과속의뢰조사(독방)	확	인	공,탄실	실경,전향실경,전향실경,실경,전향실경,전향실경,실경
8)	송석민	36	7	83. (안동)	안기부		일본관련	유	X	탄	실경,전향실경,전향실경,실경
9)	양승선	57	7	86.4.27(전주)	육인동	72일		유	X	탄	실경,전향실경,전향실경,실경
10)	양정미(여)	57	15	82.9. (광주)	안기부	90여일				호	
11)	양희선	50	무기	73.8. (대전)	육인동	60여일	일본관련			향	
12)	오주석	58	7	83.10. (전주)	안기부				확	인	
13)	이성희	61	무기	74.3.15(광주)						공,탄,호	
14)	이순희(여)	39	12	82.6. (광주)	남영동	25일		유	X	공,탄,호	
15)	이창국	68	15	84.5.1(안동)	안기부	77일	연과제	유	85.3.21		최정정,최정정
16)	김의관	8	8	87.7.13(대전)			일본관련	무	확	인	공,탄,호
17)	정금란(여)	39	7	84.5.25(광주)	남영동	30일		유	84.7.18,19	공,탄,호	
18)	정삼근	45	7	85.7.15(광주)	남북어부(68년)	52일		유	확	인	호
19)	정종희	56	12	80.11. (광주)	안기부		남북어부(68년)	유	확	인	호
20)	조상록	42	무기	78. (대전)	호안교포	70여일	일본관련	확	인	호	실경,전향실경,전향실경,실경
21)	차종길	43	10	83.3.11(광주)	안기부						최정정,최정정,실경
22)	함주명	58	무기	83.2.18(전주)	육인동	60여일		유	X	탄	실경,전향실경,전향실경,실경

사건으로 김성학(신동아 10월호참고)씨는 72일간 보안대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가 재판중 무죄로 석방된 경우를 간접적으로 반증할 수 있다.

(2) 나이별 구분(1988년, 11월 15일 현재)

나이	계	60세이상	50세이상	40세이상	30세이상	미확인
명	22	3	7	4	6	2

(3) 성(性)별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명	22	19	3

(4) 형량별 구분

형량	계	부기	15년	12년	10년	8년	7년	미확인
명	22	4	4	3	2	1	7	1

2. 관제빨갱이의 역사가 분단의 역사와 병행되어온 이유

분단과 더불어 동족간 전쟁을 치른 남한내에서는 광적인 승미·반공의 신봉자 이승만독재정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철저한 반공교육을 시행한 남한은 반공국가의 최선봉국가가 되었다. 그 속에서 반공교육은 받은자와 받고 있는 구성원들의 눈에 비친 "간첩"이라는 대상은 마치 원수로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반공반복의식이 깊이 박힌 이면에는 이승만정권—박정희정권—전두환정권—현노태우정권으로 이어진 독재정권의 반공정치이데올로기가 깊게 내재되어 있다. 즉, 남한내 분단—반공의식은 엉뚱하게도 독재정권의 장기화, 안정유지에 철저히 이용되어 왔다. 독재정권이 위태로울 정도로 혼란기가

생기면(큰 시위사건, 정치경제의 비리등에 의한 혼란기) 항상 준비하여 놓은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사회혼란상태를 무마, 환기시키는 역할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 왔다. 이렇게 정치적 희생물로 분단과 함께 생존해온 것이 바로 ‘관제 빨갱이’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살벌한 반공의식으로 인해 사회에 대해 단 한번의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주어지지않고 무조건 간첩이라는 매도와 질책을 가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독재정권들이 공안수사관들을 양성하고 ‘건수’(간첩사건)를 할당 획책한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독재자들은 자신의 영구적 영달을 위해 수사관들에게 막대한 권력과 자금을 지급하여 이 나라 헌법의 존엄성과 정통성자체를 의심케한 정도로 특혜를 베풀었다. 그 결과 수사관들의 반민주적·비인권적 만행은 날로 커져만 갔고 특히, 현황(6)에서 보여지듯이 5공화국시절의 관제빨갱이 제조업은 호황을 이루었고 거대한 기관들(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의 생탈전은 극치를(현황5 참고) 달고 있다. 덧붙여 독재자들이 상급과 진급의 특혜를 내걸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관제빨갱이가 생기게 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관제빨갱이 사건은 유독 장기불법구금이 허다하다. 이는 살인적 고문을 위해 자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관제빨갱이’들은 도저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현황9 참고). 게다가 정치권내에서 조차 무관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도소내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 처박혀져 버리고 타 재야운동사건에 비해 엄청난 차별탄압을 받고 있다. 당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를 개·돼지 취급하여 많은 관제빨갱이들이 이시각에도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전향을 강요·탄압함으로써 관제빨갱이 스스로가 간첩이 되게하는 전향제도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5) 조사기관별 구분

조사기관	계	안 기 부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육인동분실	보안대	치안본부 남영동분실	제주대공과	미확인
명	22	8	4	3	2	1	4

(6) 구속년도별 구분

구속년도	계	'73년	'74년	'78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명	22	1	1	1	1	1	2	6	2	2	4	1

(7) 사건내용별 구분

- 일본관련(조총련) 사건: 15명
- 자수간첩이 자수증명하기 위해 북에서 들은 아무개 친척의 이름만 말한것이 화근이 되어진 사건(나진씨): 1명
- 남파간첩(1965년)이 친척을 만나게 되었는데 불고지 죄가 빌미가되어 조작된 사건. 장남을 간첩으로 한 사건: 1명(정종희씨)
- 연 좌 제 사건(이창국씨): 1명
- 1968년 납북어부였던 사건(정삼근씨): 1명
- 미 확인 3명
- 계 22명

(8) 신문·방송계제별 구분

구분	계	계제된 사건	미계제된 사건	미 확인
명	22	10	4	8

(9) 소내에서 생활이 곤란한 사례

1) 정종희씨(56세, 12년 선고)

: 현재 8년째 수감중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거동이 힘든 상태이며 구속되기전 부터 앓아왔던 위궤양이 심한 상태임.

2) 양정이씨(여, 67세, 15년 선고)

: 현재 6년째 수감중. 폐결핵 3기로써 거의 절망적인 상태이

고 연로한 여자로서 교도소생활을 아직도 적응치 못하고 있음.

3) 이창국씨(68세, 15년선고)

: 현재 5년째 수감중. 구속되기전 치질이 심해 수술을 세번씩이나 받았음. 현재 심각할 정도로 재발 하였음. 위장장애때문에 죽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임.

4) 조상록씨(43세, 무기)

: 현재 11년째 수감중, 위장장애가 심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으며 고문·구타로(11년전 중앙정보부에서) 이빨이 모두 부러지거나 빠져서 현재 틀니(윗니, 아랫니)를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뼈와 살가죽만 남아 있을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임. 이 사건을 계기로 집안이 풍지박산되어 영치금 및 면회할만한 가족이 마땅치 않음. 누님이 있으나 가정이 어려워 2개월~4개월 간격으로 면회를 간다고 함.

5) 함주명씨(58세, 무기)

: 현재 3년째 수감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날씨가 흐리거나 기타 질병의 기미만 있으며 온몸이 흉할정도로 부어 옷을 갈아입지 못할 정도라고 함.

6) 나진씨(56세, 15년 선고)

: 현재 8년째 수감중. 고문으로 눈이 실명된 상태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함. 신경통이 심하다고도 함.

7) 양승선씨(57세, 7년 선고)

: 현재 3년째 수감중. 고문으로 우안은 실명, 좌안은 실명으로 진행중, 고혈압이 있어 남아있는 좌안에 직·간접영향이 우려되고, 허리디스크와 신경통(고문후유증), 현기증(어지럼증)이 있어 교도소 생활이 힘든 상태임.

3. '관제빨갱이' 가족의 생활

전술한 바와 같이 잘못되어진 사회구성원들의 반공의식은 '관제빨갱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가족에게 까지 굴레를 씌우게 되고 대부분의 가족들은 자신들마저 간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실을 숨김채 이사를 다닌다거나 친·인척과 소식을 끊으므로써 숨어살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은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느끼게 되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만다. 예를들자면 변호사 선임시 간첩사건이기 때문에 변론거부를 당하자 법의 범주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식해 버려 비민주적 재판을 그대로 받고만 다. 그런 재판은 거의 1심형량이 대법까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대부분 가장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평온한 가정은 철저히 파괴되고 가정주부였던 부인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이때문에 진실을 밝히려는 구명운동을 전개 할 수 없는 딱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것은 가족의 2세대들 문제다. 당사자나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어하지만 사회의 살벌한 눈총이 2세에게조차 숨겨버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학교에서 공산주의자는 악마이고 우리의 원수로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은 2세에게 "아빠는 간첩이다."라고 밝힐 경우 어떤문제가 생기겠는가? 독재정권은 이런점까지도 철저히 이용해 혼란기 무마용으로 TV 와 신문을 통한 대대적 과장·왜곡보도하는 바람에 그 가족은 더더욱 숨어살게 되었고 2세대들은 원망하고 올바른 인간상 정립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같은 가족들의 말못할 사연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제빨갱이 사건이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4. 관제빨갱이 사건의 인식을 달리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진실이 왜곡되고 있는 심각도는 한 개인의 희생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연결된다. '관제빨갱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에서 대담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지껏 독재정권에 빌붙어 '관제빨갱이'를 매도하는데 일원이 되어 왔던 언론은 자성을 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가족들은 은폐하였던 진실을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가족들이 숨어살고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조차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이런 국민적 의식개혁과 운동차원에서 조성된 진실을 법조계에서는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고 법조계는 재수사를 전제로 재판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제빨갱이' 가족들은 스스로가 떳떳하고 용기있게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지껏 철저히 소외되어온 '관제빨갱이' 본인 스스로도 타의(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의 희생물이 된 엄연한 정치범=양심수(분단된 한국에서만 양심수)라는 긍지를 갖고 차분히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재야운동세력, 애국국민의 사랑과 단결된 투쟁으로 정치의 장에서 해결하는 역사의 보상에 의해서만 치유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본다. 또한 우리 '관제빨갱이' 가족들은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 등 반민주적 악법 철폐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2.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 앞에 서본 인간이라면 누구나 흡사 보이지 않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괴물 앞에 알몸으로 선 인간의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정한 관료체계는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동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는 그것을 열람할 수가 없는 고로 그 보고서가 나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것을 시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반대신문할 수도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고서는 관료체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안처분 심의 위원회로 도달한다.

나에게는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도 허락되지 않으며 그들도 서준식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의위원들은 거의 뻘한 내용인 '동태보고서'를 건성건성 훑어 보고는(이것도 의심스럽다) 테이블 위에 쌓아 놓고, 아마도 그 날 점심식사를 어느 식당에서 어떤 메뉴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 훨씬 쉽게 보안감호처분 2년 갱신을 의결할 것이다.....

나는 또다시 2년을 이 싸늘한 1평짜리 감방에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전과정에서 나는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처분대상'에 지나지 않는다.”-어느 사회안전법 피해자의 증언-

I. 사회안전법 성립의 배경

특정한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파괴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써

그 사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향'은 1933년경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그런데 이 '전향'을 창조해낸 일본제국주의는 이옥고('치안유지법'으로써 감옥에 가둔)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전향을 거부한 채 감옥에서 만기출소 하는 일의 '위험성'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전향'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감옥에 가두어놓을 수 있는 독창적인 제도, 즉 '조선사상범예방규령'을 다시 1941년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을 대한민국은 그대로 계승했다. '전향'은 해방후 잠시 그 모습을 감추었다가 56년경의 대한민국 감옥에서 소생했으며, '전향'을 하지 않는 사상범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놓은 '사회안전법'은 50년대의 장기수들이 만기출소할 무렵인 1975년에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하여 당당하게 역사의 무대에 재등장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나 '조선사상범예방규령'의 조문을 '사회안전법'과 대조해서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 법률기술과 문장의 유사성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회안전법'이 제정된 1975년은 영구집권을 기도하는 박정희 유신권력과 이에 저항하는 국민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4월 8일 고려대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공포하여 휴교령을 내렸고 4월 12일에는 21개 대학을 전면휴강에 들어가게 했다. 5월 13일에는 또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 시키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2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같은 탄압 속에서도 국민들의 저항은 불길처럼 거세게 타올랐으며 유신독재정권은 이를 무마하는 통치기술의 하나로써 대량구속에 이은 대규모 특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몇차례의 대규모 특사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했는데, 이 역할을 '사회안전법'이 수행하게 된다.

즉 특사로 풀려나온 정치범들의 생활과 활동을 사회안전법은 감옥 밖에서 규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II. 사회안전법의 내용(누구에게 어떤 보안처분을 누가 과하는가?)

사회안전법은 반국가사범에 대하여 형집행이 끝난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교육·개선(즉 사상전향과 '반공정신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세가지의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이 결정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그리고 보안처분의 기간은 2년이지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무한정의 갱신이 가능하다.

① 보안처분 대상자

보안처분 대상자는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자인 데, 그 특정범죄란,

형법—내란과 외환의 죄(27조 또는 101조)

군형법—반란죄, 이적죄(5조, 16조)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구성(3조), 목적수행(4조), 자진지원·금품수수(9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등(7조) 회합·통신(8조), 편의제공(9조)

이와 같은 대상자는, 국가보안법의 확대적용에 의해 용공좌경분자로서 규정된 반정부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다.

② 보안처분의 내용

사회안전법에는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안감호의 세가지 처분이 있다.

* 보호관찰— 위 대상자 중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교육개선이 필요한자”에게 과해지는 데, 신고의무(3개월마다 중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 날짜, 장소, 내용등을 신고)와 복종의무(죄를 범할 우려 있는 일정의 행동을 하지 말 것,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건, 인물, 단체를 가지거나 접촉하지 말 것)라는 두가지 불이익을 입는다.

* 주거제한—“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위의 보호관찰자에게 과해지는 모든 제약과 함께, 지정 주거지역(시및군) 바깥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한다.

* 보안감호—“재범을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도소와 똑같은 시설(감호소)에 수용하여 교화·감호를 한다.

③ 보안처분 결정권자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처분결정을 한다.

④ 기간

2년을 무한정 갱신

Ⅲ. 사회안전법의 위헌성

① 신체의 자유권 위배

사회안전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여러가지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즉 사회안전법대로 한다면 가령 피보안감호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없이 구금되며, 진술거부권은 물론 친술의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고, 변호인 선임권, 구속적부 심사권도 없이, 법관에 의한 공개재판도 받지 못한 채 행정기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구금생활을 해야 한다.

② 죄형법정주의 위배

사회안전법에 규정된 세가지 보안처분은 각각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런 애매하고도 주관적인 요건 때문에 처분결정은 언제나 자의에 내맡겨지게 된다.

③ 일사부재리와 소급입법금지 위배

보안감호처분은 자유형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 사실상의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두개의 형벌을 과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법은 이 법 제정 이전에 국가보

안법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20년 혹은 30년전 행위로 복역한 후 착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수감된다는 비극적 사태를 빚고 있다. 20년동안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법 제정 후에 다시 구금된 사람도 있었고 지금 청주보안감호소에는 10년의 사회생활 후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다.(신현철·한백렬씨)

④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배

보안감호처분이 분명히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라면 그 결정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공개된 법정에서 법관이 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은 행정관리가 적법절차 없이 비밀심사로써 결정하고 있다.

⑤ 양심의 자유권 위배

사회안전법이 내포하는 많은 위헌성 중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양심의 자유권 위배이다. 사상범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사상범의 내심에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는 데, 그 경우 분명하고도 손쉬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전향' 제도 자체가 양심의 자유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이다. 사회안전법은 사실 '전향' 여부라는 기준을 잃으면 혼돈에 빠지고 붕괴되어될 것이다.

IV. 사회안전법은 없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안전법은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

이며 비민주적·비인도적인 악법이다. 지금 이 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청주보안감호소에 60세·70세 고령임에도 죄도 없이 보안감호처분을 14년째나 받고 있는 사람들. 주거제한과 보호관찰처분으로 매일을 직접적 통제 속에서 음산한 기분으로 살아야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유신체제를 붕괴하고도 9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계속 탄압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신헌법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제 이 법은 더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어졌다.

법의 제정과정이나 내용에 관계 없이, 법이라는 형식을 빌기만 하면 그 어떠한 종류의 인권침해나 독재도 가능하다는 시대착오적 법만능사상은 사라져야 한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20조 1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명목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이 법은 5·16 이후 군정기간이었던 1962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독재 세력은 민정 이양을 앞두고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이 법은 독재가 강화될 때마다 개악되었다. 유신직후인 1973년 3월에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으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금지통고,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배제, 학문 학술 등의 집회의 금지통고,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배제, 학문 학술 등의 집회의 집회 문란자의 처벌조항등이 삽입되었다. 또 5·17 쿠데타 이후인 1980년 12월에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집회 및 시위의 규제 기준은 훨씬 더 확대되고 추상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도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서 제

정, 개정되어 왔다. 이 점은 이 법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이유도 되고 있다.

II. 집시법에 의한 탄압 양태

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관제 집회, 시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회, 시위가 불법이다.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 실현을 위한 집회, 시위는 모두 집시법을 위반 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화와 민중 생존권 요구가 거세어진 '80년대에 집시법에 의해 기소된 양심수의 수는 급증하였다. '78년에 6명, '79년에 2명, '82년에 130명, '83년 283명, '84년 249명, '85년 54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 말기인 '86년에는 전국대 점거 농성사건에서만 1265명이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등 위한 혐의로 구속되고 이중 395명이 기소되었다.

III. 집시법의 문제점

1. 시위 개념의 확대

이 법은 [제1조 제2항]에서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기타 옥외의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 개정된 것으로서 시위의 장소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국한시키지 않고 “도로, 기타의 옥외장소”로 확대하였다. 이는 대학 구내나 종교시설내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구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했고 긴급조치 9호나 계엄선포령을 대

체할 평상시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유의 추상성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항중의 하나가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조항이다. 1980년에 신설된 [제3조 1항]의 3·4호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특히 제1항, 제4호는 가장 빈번히 적용되는 조항인데 '현저히', '사회적 불안', '야기시킬 우려' 등의 용어는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으로서 명확성의 이론에 따라 위헌이다. 제1항 제5호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구체적 내용은 물론이고 개념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에게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5가지 유형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해산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개 경찰서장이나 국장에게 헌법재판적 기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또한 제3조 제2항에서 예비음모에까지 처벌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일상적 정치활동영역을 크게 침해하는 조항이다.

3.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신고(사실상의 허가제)

[제4조]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48시간전에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제4조의 2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경찰국장은 신고된 옥외 집회 또는 시위가 제3조 제1항등에 위반할 때에는 집회 및 시위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신고제는 형식적일 뿐이며 사실상 허가제가 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명시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조항이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 실제로 허가제와 다름없이 해석, 적용되는 것도 허

가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능케 하는 제4조의 2 역시 위헌이다.

4. 경찰관의 지시 또는 출입

동법 [12조]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장소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출입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0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전의 "옥외의 집회나 시위"를 "집회나 시위"로 바꾸어 옥내의 집회에서도 경찰의 출입을 허용했으며 '주최자'를 '주최자 또는 장소관리자'라고 바꾸어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정보정치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벌칙규정의 문제점

현행법은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 유신체제하의 구법에서도 참가자 1년이하, 주최자 3년 또는 5년이하의 징역이던 것이 현행법에서는 각각 3년,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커지고 새로이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삽입되어있다.

Ⅳ.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밝혀졌듯이 집시법은 그 제정, 개정 모두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독재세력의 비정상적인 쿠데타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법은 법전체가 애매한 조문으로 규정

되어 있고, 사실상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에게 헌법 재판적 기능까지 위임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차 있다.

이 때문에 집시법은 군사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마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4. 행형법

군사독재정권 치하의 가장 심대한 피해자인 민중의 고통을 제도화 시켜놓는 반민주적 악법의 철폐를 위한 대중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드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행형법에 관한 개정문제는 여하의 반민주악법과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민중의 직접적인 생활을 강압적으로 억압하고 기본적으로 독재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제반 악법은 일상적 생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상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행형법은 일상생활과 차단된 지역, 즉 독재정권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구조·공간에서의 생활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많은 법률에 대해 일반인은 직접 그 부적합성, 비민주적 성격을 실감할 수 있으나 행형법의 폐해에 대해서는 쉽사리 통감하기 어렵다. 집시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의 반민주성에 대해 공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법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의 수형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의 비인간적 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로서 즉각적인 개정이 있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구속자의 가족에게도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인 것이다. 출잡아 전국 35개 교도소에 수용된 5~6만명 가량의 재소자와 20여만명의 가족은 결코 극소수 내지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I. 행형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1. 교도소의 병영화

행형법과 그 시행령은 여타의 반민주악법DL 그러하듯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더욱 개악·강화되었다. 행형법 제15조 가운데 80년 12월 22일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형자 이외의 일반인에게도 필요에 따라 어떤 형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법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합법화된 것이다. [31조 2항]도 역시 80년, 국보위에서 신설한 조항으로, 일개 교도소장의 명령으로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 심사단련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80년 그 악독한 삼청교육대의 후속조치였음을 아는 사람은 익히 알고 있다. 이른바 교도소내 순화교육이며 이는 수형자의 신체를 극히 혹사시키는 단순한 교육과정이다. 말이 교육이지 그저 운동장에서 하루종일 뛰게하는 그야말로 별칙에 가까운 훈련이며, 훈련도중 군가를 부르는 등 완전히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획일화키는 군대식 훈련이다.

2. 법 적용의 형식화·획일화

현행 행형법은 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극히 넓게 잡아놓고 조문 또한 애매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차단된 소내 규율 확보를 명분으로 법보라는 관례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관례라는 것이란 다름아닌 일제시대의 악랄한 고문과 징벌, 그리고 수형생활 전반에 걸친 관료행정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제23조] 수형자와 위생과 의료에 대해 명시된 바에 의하면, 머리는 짧게 깎게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체는 '단삭

'이 아니라 아예 삭발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더우기 시행령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소장의 판단으로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는 머리를 기르게 함으로써 재소자의 일부에게 특례를 주어 관과 그들을 밀착시켜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같은 재소자끼리 차별을 두어 감독·감시하는 자격을 일부 재소자에게 주고 이 자격과 '권력'의 상징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을 묵인해주는 것이다.

3. 인권유린의 극치, 징벌조항

시행령에 따르면 소장은 무제한의 권리를 갖고 징벌을 선고하게 되어있다. 표현만으로는 상당히 그럴 듯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것이다. 교도소내에서 '합법적으로' 치러지는 폭력행사는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명목 뿐인 법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자행되는 고문과 구타, 금식·금치, 집단구타, 비너뽑기, 방성구, 강제금식 등 단순한 탄압을 넘어서서 인권말살의 살인적 조치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공포로써 재범의 소지를 방지하려는 유치한 발상만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법의 사각지대를 행형법은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정·교화라는 교도소 본연의 업무는 오로지 폭력으로 대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현 정권의 기만적인 개선조치

정치범을 제외하더라도, 일방 재소자들에게 면회는 급수에 따라 월 1회로부터 무제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차별이 있고 서신도 내용검열의 조악성 뿐 아니라 보관조차 불가능하게 만

들고 있으며 소지할 수 있는 도서도 10권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 일방적인 바,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일부 수형자(1·2급)에게 면회·서신 횟수를 늘리고 집회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또한 10일부터는 전재소자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1·2급수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지금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신문열독 뿐 아니라 깃연까지 허용되어 왔다는 점, 더우기 라디오·TV청취 및 방송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전혀 기만적인 것이다. 우량수에 한하면 1·2급수들로서 전체 재소자의 0.1~0.2%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무부의 시행취지는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며, 그나마 개선된 것도 다분히 실제 소내 상황을 사후에 인정해두기 위한 술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더우기 이러한 조치조차 일선교도소에서는 '아직 지시가 안내려왔다'는 등으로 무책임한 회피를 일삼고 있어 이미 각 교도소 당국과 재소자간에 충돌을 야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II.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형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서 재소자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적인 형태로나마 재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고, 그들이 사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가 확보될 때 적어도 법의 사각지대로서의 교도소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독재정권의 안정화만을 목적으로 한 모든 악법의 철폐는 잠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적용대상에서 재소자가 예외로

될 수는 결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교도소에서 수만의 재소자가 호소하고 있다.

“징역살이 서리문제 폭력 징벌 웬말이나,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5. 노동법

천만노동자의 노동법 개정투쟁이 거센 불길로 타올랐다. 40여년 간 외세와 독재의 살인적 탄압과 억압 속에 눌러 있던 노동자의 혼이 한반도 전역에서 꿈틀거린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굴레를 깨어나가는 첫 발걸음일 뿐이다.

I. 노동법의 제정 및 개정 배경

1953년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쟁이 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전시에 발발한 조선방직노동자 투쟁과 부산부두노동자투쟁에 직면하여 이승만 정권은 노동운동이 더욱 격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법들을 제정한 것이다. 그후 5·16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노동법은 점점 더 노동자를 움아매는 악법이 되어갔고 1980년 5·17쿠테타 이후 군사강패 집단의 사이비기관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금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하는 등 노동법을 더욱 심한 악법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투쟁 이후 곳곳하게 진행되던 민주노조운동과 한층 성숙된 의식을 바탕으로 타올랐던 85년 구로연대투쟁의 횃불은 천만노동자의 핏줄 속에 이어져 왔고 급기야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불타올랐다.

이에 놀란 민정당 정권은 부분적으로 악법조항을 시급히 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은 기만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수많은 조항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죄어오고 있다.

II.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

1.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라

가. 현행법과 그 문제점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5항]에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1) 현행법 하에서는 아무나 먼저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그 조직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단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적 간섭과 사용자의 압력이 유일 노동조합에 집중되므로써 '어용노조' 시비를 끊임없이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시기와 그 이후에 "어용노조 물리치고 민주노조 건설하자"는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된 것만 보아도 현행법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현행법은 사용자들이 먼저 사주하여 어용노조를 만듦으로써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의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와 노총의 지속적인 어용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일단 만들어진 노총, 산별노조, 또는 단위 노동조합이 권력과 기업주에 불어 온갖 추잡한 작태를 연출해도 자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여 이를 물리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제약해 놓은 것이다.

나. 개정방안

(1)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 5항]은 완전 삭제되어야 한다

노동자는 아무런 제약없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어떤 이유로든 침해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노동자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없다. 오직 노동자 자신의 단결만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현행규정은 한자도 남김없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2) 흑자는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노동자의 대표성이 불명확해지고 단체교섭의 당사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따른 분열과 쟁의격화를 예상하여 결국 노동자에게 이롭지 못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높아진 의식과 투쟁경험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오히려 대표성 확립을 위한 토론, 투표, 선거 등을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기틀이 잡혀질 수 있다.

2. 서로 돕고 살자는데 3자개입 왜말이나!

가. 현행법과 그 문제점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직업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현행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은 누구나 내란, 살인, 방화 등의 범죄목적이지니지 않는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자기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데 '제3자개입금지' 규정은 이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타인의 조언·조력·지원·지도를 받을 권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인데 이를 제약하고 있다.

셋째, "조종·선동" 또는 "영향을 미칠 목적"이란 문구는 뚜렷한 규정성을 갖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2) 노동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정·교섭을 위한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규정은 노동자 측의 힘을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산업평화를 해치고 있다.

(3) 현행법은 노조의 연대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에 있으며, 그 단결의 범위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따라 개별 사업장을 뛰어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조합 간의 연대활동을 물리적 강제력으로 막겠다는 취지는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의 소산이다.

나. 개정방안

(1) 현행규정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표현과 행동의 자유는 노동현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능력을 위해서도 현행규정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2)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는 어떠한 법조항도 단호히 거부한다.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겠다는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천만 노동자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몰상식

한 의도를 지닌 정당이나 정권은 반드시 천만 노동자와 모든 민주세력의 힘에 의해 타도될 것이다.

3. 방위산업체 노동자도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 현행법과 그 문제점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1) 현행법에는 방위산업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현행 쟁의금지 규정은 헌법 [제33조 3항]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이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어디에도 방산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로 '71개 주요방위산업체 지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기준이 모호하다.

(2) 현행법에서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방산 노동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봉착하게 하고 있다. 즉, 합법적 쟁의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갈 각오로 끝까지 치열하게 투쟁하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이 지속되는 한 방위산업체에서의 산업평화는 결코 기

대할 수 없다.

나. 개정방안

(1) 현행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쟁의권이 없는 노동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쟁의할 수 없는데 단체교섭이 어떤 의미를 지니겠는가. 쟁의권을 박탈당한 방산노동자들은 노동3권 전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행규정의 삭제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방산노동자의 울분을 삭힐 수 없다.

국방상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의 '긴급조정' 규정에 의거해서 쟁의의 장기화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2) 방위산업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

방위산업체에서 쟁의요건이 강화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납양말생산업체까지 이르는 현재의 방위산업체 지정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시행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의 범위는 '병기, 탄약, 군함, 군용기' 생산업체로 명백히 못박아야 한다.

4. 교사,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가. 현행법과 그 문제점

현행 노동조합법 [제8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교사와 공무원은 노동3권을 완전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따로 법률을 청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공무원
은 국가 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사는 사
립학교법 [제58조 4항]에 의해서 노동3권을 완전히 박탈
당하고 있다. 엄연한 임금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공무원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
떠한 자주적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 (2) 현행법은 민주교육과 올바른 공무집행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일방적 지시체계에 따라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
나 공무원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자구책조차
갖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 개정방안

- (1)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법 [제66조]를 폐지하는 동시에 불투명한 노동
조합법 [제8조]의 단서조항은 부득이 단결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
원에 국한시킴으로써 그 외의 모든 공무원이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2) 사립학교법이 전면 개정되어 국·공립학교 교사와 더불어 모든
교사의 노동3권도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 (3)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
조 2항]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쟁의권도 합법
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하여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향

상하자.

고용평등법의 의의는 고용기회 및 근로조건에서의 남녀평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정이 라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안
은 몇가지 중요한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법제정의 의의를 실
현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마
땅하다.

- (1) 남녀동일임금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근로조건 중 가장 핵심인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
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핵심적 내용이 빠진 입법이다. 현재
여성은 남성의 48%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차별임금의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같은 일을 같은 시
간에 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부터 상여금에 이르
기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적은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차별임금이 해
소되어 여성의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여성의 저
임금에 의해 강화되는 전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
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은 ILO
조약에서는 1951년에, EC지령에서는 1975년에 이미 채택되
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한 UN차별철폐협약에도 명시되
어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법안”에 동일임금 규정은 반드시 삽입되
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을 규정하는 자세하고도 합리적인
기준 역시 시행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2) 성차별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남녀평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성차별 행위인가에 대한 정의규정과 합리적인 성차별 행위로 법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예외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및 고용문제 조정위원회의 운영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행정기관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신속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로 제한한 것을 확대하여 당사자를 대신하여 근로여성 권익옹호단체도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자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4)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법에는 [제8조]의 경우 「해고, 정년에서의 차별과 결혼, 임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체결 금지」에만 2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법 실현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 임금, 정년퇴직 및 모성보호의 조항에도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며 형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Ⅲ. 노동악법 개정하여 평등사회 앞당기자

노동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천만노동자를 짓누르는 착취와 탄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불법적인 폭력과 협박, 회유와 매수는 계속될 것이다. 안기부, 경찰, 노동부는 여전히 기업주의 편에 설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쟁한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법률로 바뀔 것이고, 법을 바꿀 수 있을만

큼 성장한 우리의 힘은 보다 힘차게 우리를 죄어드는 굴레를 깨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의 세상에까지.



6. 농업관계법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야당은 군독과 민 정당을 패배시키려는 민중들의 열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 외견상 민주화가 의회를 통해서 달성 가능한 듯 보이는 듯하다. 야당들은 선거공약때 광주학살, 부정비리, 부정 집권, 5공화국비리등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민주 부분에서의 긴급과제인 사회안전법, 국가보안법, 노동, 농민 관계법등 악법개폐 투쟁도 시급하다. 또 이런 의회에서의 투쟁은 87년 6월 대항쟁과 7,8,9월 노동 대투쟁 그리고 작년 부터 불타오르는 농민들의 수입저지, 토지반환, 농산물 제값받기 농민대투쟁, 농협민주화 투쟁을 국회까지 확장 시켜 농민들의 주장을 제도적으로 쟁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합법성을 쟁취하고 확보된 공간속에서 대중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물론 반민주적인 악법을 개폐하는 것은 국회를 농민들이 쳐다본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생존권의 당사자인 민중들의 조직적인 투쟁력이 담보될때 비로소 민중의 이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법령을 보면 농업 기본법(헌법 삽입 포함)의 제정과 농산물 가격 유지법·협동조합법·농업 근대화 촉진법(수세관련)·농어촌 의료 보험법·양곡관리법·농지 임대차 관리법·지방 자치 단체법 등의 개폐가 시급하며 외국 농촌산물 특별법·재벌 비농업 자본의 토지 소유 금지와 농축산 분야 침투 금지 특별법·농가 부채 정리법·농지법 제정

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I. 농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민의 2/3(64.7%, 120만 농가)가 소작농이고, 농지의 1/3(30.5%, 65만정보)가 농민아닌 자들이 소유하고 농민에게 소작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일년에 약 8,000억원의 돈이 소작료란 명목으로 농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농민이 농지를 상실하게 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국내의 독점자본이 농업을 지배하는 속에서 값싼 농산물가격과 외국농축산물의 대량도입 및 농민에게 들쭉위진 각종 부당한 법령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고, 따라서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었고, 그로인해 토지를 방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농민이 토지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권력 내지 말단 행정관료와 결탁하여 자신이 농민인 것처럼 위장하고 농지를 구입하였다.

② 간척농지의 경우 1949년 농지개혁당시 이미 간척된지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간척지로 분류하여 농지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것 또한 친일파 악질지주들이 권력과 결탁하여 가능했었다.

③ 국가가 농민에 대한 토지분배를 미룬 경우도 있었다. 귀속농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의 많은 땅을 농민에게 임대하면서 국가가 임대료를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권력 자체가 농지개혁법과 소작금지의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와같이 농민아닌 자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은 모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농민의 몰락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땅은 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 즉, 땅을 경작하는 자